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기록물 생산·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내 용

1. 영구보존대상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보존대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보령시(○○○○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

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아산시(○○○○○○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지 않고 5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서산시(○○○○○○○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지 않고 3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계룡시(○○○○○실)는 2017년도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2017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면서, 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지 않고 3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당진시(○○○○○○○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지 않고 3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예산군(○○○실)은 2017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았고, 2016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지 않고 5년으로 하향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태안군(○○○○○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았다.

2. 생산의무대상 회의록 미생산 또는 미등록

「공공기록물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2014. 12. 8.부터 2017. 10. 24.까지 개최한 15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가 2014. 10. 17.부터 2017. 7. 21.까지 개최한 12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과)는 2014. 10. 16.부터 2016. 12. 20.까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1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생산

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고,

충청남도 천안시(○○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에 근거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2015. 4. 1.부터 2017. 8. 16.까지 개최한 15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천안시(○○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에 근거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가 2015. 4. 1.부터 2017. 8. 16.까지 개최한 15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보령시(○○○○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도서관법」 제30조에 근거한 ‘보령시 공동도서관운영위원회’가 2015. 4. 9.부터 2017. 2. 14.까지 개최한 6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아산시(○○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한 ‘계약심의위원회’가 2014. 10. 23.부터 2017. 4. 5.까지 개최한 12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계룡시(○○○○과)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근거한 ‘통합방위협의회’가 2014. 10. 22.부터 2017. 6. 29.까지 개최한 10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당진시(○○과)는 2014. 11. 25.부터 2017. 9. 1.까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를 28회 서면

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고,

충청남도 당진시(○○○○과)는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14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고,

충청남도 예산군(○○과)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한 ‘인사위원회’가 2014. 10. 20.부터 2017. 8. 29.까지 개최한 6건의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산·등록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태안군(○○○○과)은 2014. 10. 22.부터 2017. 9. 21.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구성된 ‘태안군 인사위원회’를 38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고,

충청남도 태안군(○○○○과)은 2014. 9. 23.부터 2017. 3. 30.까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해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를 13회 서면심의하여 심의의결서 등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기록물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하였다.

3. 기록물 평가 및 폐기대상 선정 부적정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만 절차에 따라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기록관(○○○○과)은 2015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인 ‘비위공무원 처분대장’ 등 34권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준영구, 영구로 재책정하였고, 2016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인 ‘마을금고정관인가’ 등 11권에 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

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준영구, 영구로 재 책정하였고,

충청남도 아산시 기록관(○○과)은 2015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인 ‘이륜자동차 등록원부, 이륜자동차 관리대장’ 등 27권에 대하여 1987년 「자동차등록령」 제9조의 자동차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으로 개정되었음을 사유로 1987년 이전 기록물(1979~1986년 생산)도 보존기간을 소급적용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였다.

4. 기록관 보존서고 시설환경 부적정

「공공기록물법」 제28조에 의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보존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서고의 면적은 고정식 서가의 경우 기록물 1만권당 99㎡, 이동식 서가의 경우 1만권당 60㎡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항온항습설비, 온습도계,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당진시(○○○○과)는 항온항습설비 없이 보존서고를 운영하여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온도 18~22℃, 습도 40~55%)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예산군수, 태안군수는

[시정] ① 기 생산된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에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미등록한 회의록 등은 임의의 수기대 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원안 제목으로 등록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고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생산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록관은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만 절차에 따라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하시기 바랍니다.